|  |  |  |
| --- | --- | --- |
|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선 대조확인****후 공제”시행 관리방법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공고 2013년 제31호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이하 “세관납부서”로 약칭)의 증치세 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무총국과 세관총서는 이전에 광동 등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세관납부서 “先 대조확인 後 공제” 관리방법을 전국 범위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3년 7월 1일부터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로 약칭)의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증치세 세액공제 범위 내의 세관납부서는 세무기관의 검사 및 대조확인을 거쳐 서로 부합됨이 확인된 이후에 비로소 증치세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수입화물과 관련하여 취득한 증치세 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세관 납부서는 응당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액공제 증빙 공제기한 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617호)의 규정에 의거,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세관 세금완납증명 공제 목록>(전자데이터)을 발송하고, 검사 및 비교대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경과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3. 세무기관은 검사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 데이터를 일시 및 수입증치세 국고입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사 및 비교대조하며, 매 1개월을 검사기간으로 한다. 세관납부서 발급 당일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당월, 다음 달, 그리고 세번째 달이다. 세관납부서 발급 다음 달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당월과 다음 달이다. 세관납부서 발급 다음 달 이후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당월이다.4.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는 상호 부합, 불일치, 유보, 자료부족, 중복신청의 5개 종류로 구분된다. 상호 부합은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의 번호와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번호가 일치하고, 비교 대조한 유관 데이터 역시 모두 동일함을 의미한다. 불일치는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의 번호와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번호는 일치하나, 비교 대조한 유관 데이터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항목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유보는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스템에 해당 세관납부서에 대응하는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 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 기로 넘겨 계속 비교 대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자료부족은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한 세관납부서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스템에 해당 세관납부서에 대응하는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일련번호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신청은 2개 또는 2개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세관납부서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하고, 동시에 비교 대조한 유관 데이터가 세관이 이미 핵소처리한 세관납부서의 데이터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5. 세무기관은 매월 납세신고기한 내에 납세자에게 전월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응당 주관 세무기관에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검사와 비교대조 결과가 서로 부합됨으로 결정된 세관납부서의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이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를 제공한 당월 신고납세기간에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6.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 결과가 불일치, 자료부족, 중복신청, 유보로 내려진 것을 의미한다.(1)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가 불일치 및 자료부족으로 내려진 세관납부서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검사결과가 내려진 후 180일 내에 세관납부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관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데이터 수정 또는 비교대조를 신청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납세자 데이터의 수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한 후 다시 검사 및 비교대조를 진행한다. 데이터 수집의 오류가 아닌 경우,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데이터 비교대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기관은 세관과 함께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세관납부서의 액면 정보와 납세자가 실제로 수입한 화물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수취한 다음 달 신고기한 내에 공제를 신고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2)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가 중복신청으로 결정된 세관납부서의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세관납부서의 액면정보와 납세자가 실제로 수입한 화물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납세자는 응당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다음 달 신고기한 내에 공제를 신고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3) 검사 및 비교대조 결과가 유보인 것으로 결정된 세관납부서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검사 및 비교대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데이터 비교대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7. 납세자는 “미납세액” 과목에 “공제대기 매입세액” 명세과목을 설치하여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호부합 결과를 취득하지 못한 세관납부서의 매입세액 결산용으로 사용한다. 납세자는 세관납부서를 취득한 후 “매납세액-공제대기 매입세액” 명세과목에 차변 기장하고, 대변에 유관 회계과목으로 처리한다. 검사와 비교대조 결과가 상호부합으로 결정되고 검증이 완료된 후 공제를 허가하면 차변 “미납세액-미납증치세(매입세액)”과목에 기장하고, 대변 “미납세액-공제대기 매입세액” 과목으로 기장한다. 검사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붉은 글씨로 차변에 “미납세액-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기장하고, 대변에도 붉은 글씨로 유관 과목을 기장한다. 8. 증치세 납세신고표와 세무기관 “창구” 비교대조 항목의 조정(1) 2013년 7월 1일부터 납세자가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호부합 결과를 득하지 못한 세관납부서 매입세액은 <증치세 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용) 첨부표 2 “공제대기 매입세액” 중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세”란에 기입한다. (2) 2013년 8월 1일부터, 세관납부서의 “창구” 비교대조 항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증치세 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용) 첨부표 2의 제5란 세액이 검사시스템에서 비교 대조하여 상호 부합된 것으로 결정되고, 검증 후 공제가 허가된 세관납부서상의 세액과 같거나 적은 지를 확인한다.9. 본 공고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및 폐기 중고물자 계산서 관리를 강화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4)128호),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지역에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先 대조확인 後 공제”를 시범시행하는 관리방법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83호),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지역에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先 대조확인 後 공제”를 시범시행하는 관리방법의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11)196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합니다.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2013년 6월 14일 |  | **关于实行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公告2013年第31号为了进一步加强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以下简称海关缴款书）的增值税抵扣管理，税务总局、海关总署决定将前期在广东等地试行的海关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在全国范围推广实行。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自2013年7月1日起，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纳税人）进口货物取得的属于增值税扣税范围的海关缴款书，需经税务机关稽核比对相符后，其增值税额方能作为进项税额在销项税额中抵扣。　　二、纳税人进口货物取得的属于增值税扣税范围的海关缴款书，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扣税凭证抵扣期限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617号）规定，自开具之日起180天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海关完税凭证抵扣清单》（电子数据），申请稽核比对，逾期未申请的其进项税额不予抵扣。　　三、税务机关通过稽核系统将纳税人申请稽核的海关缴款书数据，按日与进口增值税入库数据进行稽核比对，每个月为一个稽核期。海关缴款书开具当月申请稽核的，稽核期为申请稽核的当月、次月及第三个月。海关缴款书开具次月申请稽核的，稽核期为申请稽核的当月及次月。海关缴款书开具次月以后申请稽核的，稽核期为申请稽核的当月。　　四、稽核比对的结果分为相符、不符、滞留、缺联、重号五种。　　相符，是指纳税人申请稽核的海关缴款书，其号码与海关已核销的海关缴款书号码一致，并且比对的相关数据也均相同。　　不符，是指纳税人申请稽核的海关缴款书，其号码与海关已核销的海关缴款书号码一致，但比对的相关数据有一项或多项不同。　　滞留，是指纳税人申请稽核的海关缴款书，在规定的稽核期内系统中暂无相对应的海关已核销海关缴款书号码，留待下期继续比对。　　缺联，是指纳税人申请稽核的海关缴款书，在规定的稽核期结束时系统中仍无相对应的海关已核销海关缴款书号码。　　重号，是指两个或两个以上的纳税人申请稽核同一份海关缴款书，并且比对的相关数据与海关已核销海关缴款书数据相同。　　五、税务机关于每月纳税申报期内，向纳税人提供上月稽核比对结果，纳税人应向主管税务机关查询稽核比对结果信息。　　对稽核比对结果为相符的海关缴款书，纳税人应在税务机关提供稽核比对结果的当月纳税申报期内申报抵扣，逾期的其进项税额不予抵扣。　　六、稽核比对结果异常的处理　　稽核比对结果异常，是指稽核比对结果为不符、缺联、重号、滞留。　　（一）对于稽核比对结果为不符、缺联的海关缴款书，纳税人应于产生稽核结果的180日内，持海关缴款书原件向主管税务机关申请数据修改或者核对，逾期的其进项税额不予抵扣。属于纳税人数据采集错误的，数据修改后再次进行稽核比对；不属于数据采集错误的，纳税人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数据核对，主管税务机关会同海关进行核查。经核查，海关缴款书票面信息与纳税人实际进口货物业务一致的，纳税人应在收到主管税务机关书面通知的次月申报期内申报抵扣，逾期的其进项税额不予抵扣。　　（二）对于稽核比对结果为重号的海关缴款书，由主管税务机关进行核查。经核查，海关缴款书票面信息与纳税人实际进口货物业务一致的，纳税人应在收到税务机关书面通知的次月申报期内申报抵扣，逾期的其进项税额不予抵扣。　　（三）对于稽核比对结果为滞留的海关缴款书，可继续参与稽核比对，纳税人不需申请数据核对。　　七、纳税人应在“应交税金”科目下设“待抵扣进项税额”明细科目，用于核算已申请稽核但尚未取得稽核相符结果的海关缴款书进项税额。纳税人取得海关缴款书后，应借记“应交税金—待抵扣进项税额”明细科目，贷记相关科目；稽核比对相符以及核查后允许抵扣的，应借记“应交税金—应交增值税（进项税额）”专栏，贷记“应交税金—待抵扣进项税额”科目。经核查不得抵扣的进项税额，红字借记“应交税金—待抵扣进项税额”，红字贷记相关科目。　　八、增值税纳税申报表及税务机关“一窗式”比对项目的调整　　（一）自2013年7月1日起，纳税人已申请稽核但尚未取得稽核相符结果的海关缴款书进项税额填入《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附表二“待抵扣进项税额”中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栏。　　（二）自2013年8月1日起，海关缴款书“一窗式”比对项目调整为：核对《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附表二第5栏税额是否等于或小于稽核系统比对相符和核查后允许抵扣的海关缴款书税额。　　九、本公告自2013年7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和废旧物资发票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4〕128号）、《国家税务总局关于部分地区试行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的通知》（国税函〔2009〕83号）、《国家税务总局关于部分地区试行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11〕196号）同时废止。　　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 海关总署　　2013年6月14日 |